

임지구분	임기내	사업주체	김천시
신규여부	계속사업	중앙정부 지원	예산 지원
예산구분	예산	사업이행도(진도율)	정상추진
주관부서	보건행정과	협업부서	-
공약실명제	과장 최장호(2701), 팀장 허미경(2703), TF팀장 김태훈(6228) 담당자 안재형(2713)		

### 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김천시 평화동 298-3번지 일원
- 규 모 : 대지면적 5,861.1㎡, 연면적 12,396.73㎡
- 사 업 비 : 424억원(국비 56, 도비 7, 시비 361)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5년
- 주요시설 : 진료실, 예방접종실, 재활치료실 등 진료기능,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, 어린이 체험관 등 보건사업기능, 사무실 등 행정기능

### □ 추진실적

- 2021. 12. :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
- 2022. 01. : 기본설계 실시
- 2022. 09. :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승인 및 실시설계 실시
- 2023. 05. :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승인  
조달청 공사 입찰 의뢰
- 2023. 07. ~ 08. : 공사 시공업체 계약 완료
- 2023. 10. :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완료

## □ 연차별 추진실적/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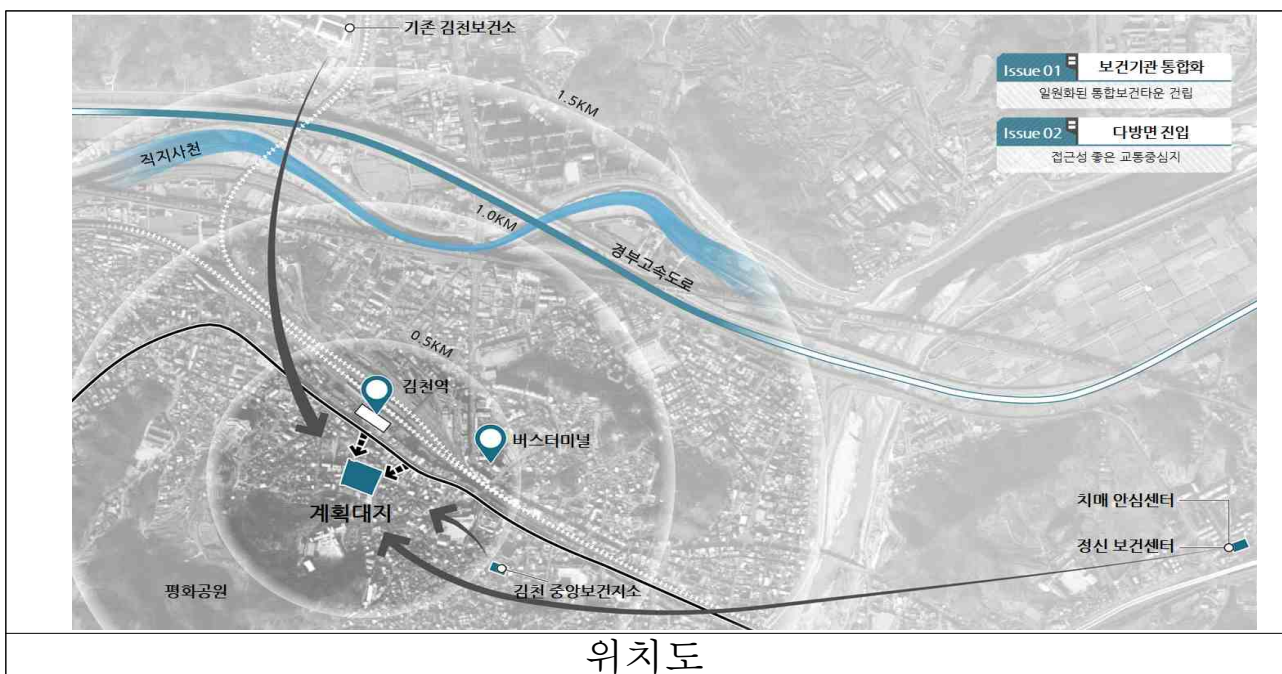
연도	주요사업내용	비고
2022	•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승인	
2023	•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승인 • 공사 입찰 및 착공	
2024	•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실시	
2025	• 공사 준공 및 보건소 개소	

## □ 연차별 투자수요

(단위: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 (A+B+C)	기투자 (A)	임기 내 투자계획(B)				
			소계	2022	2023	2024	2025
계	42,403	5,196	37,207	15,131	800	14,057	7,219
국비	5,591		5,591	4,208		1,383	
도비	681		681	508		173	
시비	36,131	5,196	30,935	10,415	800	12,501	7,219

## □ 위치도 및 사진대지





조감도

□ 기대효과

- 보건·의료서비스의 일원화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
  - 보건소, 중앙보건지소, 치매안심센터 통합으로 각종 보건사업 및 진료서비스 일원화
-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
  - 보건소 이전을 통해 공무원, 공무직 등 약 170여명의 직원이 상근하고,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도 늘어나 구도심 활성화 기대

□ 변경사항 : 해당없음

□ 이행내용 : 정상추진

- 당초 이행지표 : 2022년 기본설계, 실시설계, 토지보상  
2023년 토지보상 및 착공

## ○ 집행실적

- 2022. 09. :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승인 및 실시설계 실시
- 2023. 12. : 공사 착공

2022년 노인복지서비스개선사업(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)

시설설계심의 결과통보서(9월)

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지원팀

**■ 심의결과**

○ 시설설계심의 후 착공보고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
- 완료보고 시 국고 집행 내역 등분 제출할 것

연번	시도	시군구	기관명	사업 유형	불가의견	심의 결과
1	경북	김천시	김천시보건소	인정 교육	1. 5월 시설설계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계획을 확인하여 시설설계심의를 통과하나,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, 진흥할 것 가. 차폐관심선터는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직통선과 이격용 고려해 볼 것	통과

<보건복지부 설계심의 결과 통보서>

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8. 11. 29.>


**착공신고필증**

-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건축구분	신축	허가(신고)일자
건축주	김천시	2023년08월03일
대지위치	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98 - 3 외 12필지	
대지면적	5,861.1㎡	
건축물명칭	평화동 298-3 주용도	업무시설(공공업무시설)
건축면적	2,828.38㎡	건폐율 48.26%
면적적합계	12,396.73㎡	용적률 138.5986%
착공예정일자	2023년08월28일	

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23년12월27일



김천시  
장인인

유의사항
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는 취소되고, 건축신고만 납부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장·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2. 제2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3. 「건축법」 제41조에 따른 착공신고 관계 법령 또는 공역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li> </ol>

210mm×297mm [복사용지(2중) 70g/㎡]